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 >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95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	2
2. 관계기관 의견	11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31.

(3) 회 부 일 : 2025. 4.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는 직위임.

그러나 헌법재판소 규칙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17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1인을 사무처장으로 보하도록 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중 일부는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및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재판관회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 (생략) 3. <u>사무처장, 사무차장</u> ,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생략) ⑤ (생략)	제16조(재판관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무차장</u> , ----- -----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사무처)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7조(사무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u>

현행	개정안
⑥ ~ ⑨ (생략)	있다. ⑦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현행 「헌법재판소법」 상 사무처장

현행 「헌법재판소법」¹⁾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 1) 「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사무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

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두고(제17조제1항),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되(제18조제1항),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제16조제4항제3호).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된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제17조제3항),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7조제4항).

한편,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조의2)²⁾.

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같이 재판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유사한 기구로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행정처가 있음.

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원조직법」은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9조)³⁾.

한편, 「법원조직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8조제1항)⁴⁾, 법원행정처장은 실제 대법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실제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67조제4항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의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서 보할지 정무직으로 임명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의 개정이 수차례 있었는데 그 연혁을 보면,

-
- 3) 「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4) 「법원조직법」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 5) 「법원조직법」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의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49. 9. 26.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 대법관의 수는 9인 이내로, 별정직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가,⁶⁾

1981. 1. 29. 개정을 통하여 대법원판사의 수를 대법원장 외에 12인으로 증원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판사 중에서 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⁷⁾

1987. 12. 4. 개정을 통하여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하고,⁸⁾

2005. 12. 14. 개정을 통하여 대법관의 수를 1명 줄여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하고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였는데⁹⁾ 그 취지는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의 분리를 통한 사법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법원행정처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¹⁰⁾

6) 「법원조직법」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제5조 대법원에는 대법관, 고등법원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대법관의 원수는 9명이내로 하고, 판사의 원수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제64조 법원행정처에 처장1인 및 차장1인을 둔다.

처장은 별정직으로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한다.

차장은 1급으로하고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5조 법원행정처장, 동차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7) 「법원조직법」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제5조 ① 대법원에는 대법원판사를,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② 대법원판사의 원수는 대법원장외에 12인으로 하고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다만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원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판사중에서, 차장은 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판사 및 판사의 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원조직법」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제4조 (대법관) ①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제68조 (임명)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중에서, 차장은 지방법원장급이상의 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9) 「법원조직법」 [법률 제7725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제4조 (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제68조 (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10) 「법원조직법」 [법률 제7725호, 2005. 12.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이후 2007. 12. 27. 개정을 통하여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증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도록 다시 개정¹¹⁾하였는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회의에 배석을 할 뿐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행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음.¹²⁾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장의 임명과 관련한 개정 연혁을 보면,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서 보할지 또는 정무직으로 임명할지 여부는 사법행정조직의 역할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대법관 정원에 대한 입법적인 결정과 함께 이루어진 점을 살펴볼 수 있음.

참고로, 현재 대법관의 정원은 14명이고, 일반사건은 대법관 3명의 합의부가 담당하며 전원합의체는 전체 대법관의 2/3이상으로 구성되는데¹³⁾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판의 운영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11) 「법원조직법」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4조 (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제68조 (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12) 「법원조직법」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3)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검토의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으로 임명되어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아닌 별도의 정무직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재판관회의에서 소관사무에 관한 출석·발언 외에 입법 의견의 제출이나,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¹⁴⁾, 국회 등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하거나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관회의의 의결권이 있는 자가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회 등에 출석 시에도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14) 「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제22조제1항), 재판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헌법」 제113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¹⁵⁾.

그런데 개정안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판관 중에서 사무처장을 보하게 되는 경우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재판관은 사실상 재판업무보다 대외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함에 따라 재판관 8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8명의 재판부에서 의견이 4:4 동수를 이루어 나뉘는 때에는 “사건에 관한 결정을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¹⁶⁾에 따른 결정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15)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 「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 사건의 접수·처리건수 및 미제건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바¹⁷⁾, 국회 출석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및 사건 처리 지연 우려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앞서 「법원조직법」의 개정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관은 13인으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였다가, 2007년 대법관 수를 14인으로 증원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사법행정조직의 역할과 대법관 정원에 대한 입법적 결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대법관의 수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헌법재판관의 수는 「대한민국헌법」¹⁸⁾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재판관 증원은 개헌에

17)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 사건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제건수 현황(헌법재판소 제출)

(단위: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접수건수	1,859	1,951	2,626	2,427	2,730	3,241	2,827	2,829	2,591	2,522	25,603
처리건수	1,937	1,976	2,425	2,447	2,519	3,042	2,621	2,675	2,659	2,725	25,026
미제건수	746	721	922	902	1,113	1,312	1,518	1,672	1,604	1,401	-

18)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관한 사항과 연계되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헌법재판관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적극행정 및 국회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모든 헌법재판에 관여하므로 일부 권한 위임만으로 업무부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 헌법상 재판관 구성 및 정족수 규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정치적·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재판관의 독립성이 강조되나, 사무처장은 외부 기관과의 잦은 접촉 및 협조 관계 유지가 불가피하여 재판관의 독립성 저해 및 신뢰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